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11. 1.20 (목 10:00

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1월 10일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월 13일

3. 제안 이유

-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

4. 주요내용

- 가.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를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함(안 제1조)
- 나. 충청북도 노사민정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다. 하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라.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·조정과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‘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제2조제5항에 따르면 ‘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·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’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 관련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- 제5조 ‘협의회의 운영’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정례회의가 없이 수시 회의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.
- 제6조 ‘하부협의체 지원’에 관한 근거를 ‘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’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.